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BL(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공동주택 단지명을 당초 “**운정 아이파크 시티**”로 선정하였으나, 금회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로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청약 및 계약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0-325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분양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5.10.24.(금)	2025.12.03.(수)	2025.12.08.(월)	2025.12.11.(목)	2025.12.12.(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660-325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03.(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246**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0.24.(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487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063.8043, 074.9086, 152.5880P, 171.7503P, 192.7418P, 197.1512P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일 정	2025.12.08.(월)	205.12.11.(목)	2025.12.12.(금)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5.11.12.)로부터 **6개월간**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구역 A2BL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25개동 총 3,250세대 중 무순위(사후) 311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2025910246	01	063.8043	63	102
	02	074.9086	74	204
	03	152.5880P	152-P	1
	04	171.7503P	171-P	1
	05	192.7418P	192-P	1
	06	197.1512P	197-P	2
	합 계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기간	
										2026.07.07	2026.12.07	2027.05.07	2027.09.07	2027.12.07	2028.06.07		
63	204동 1,2호, 205동 1,2호, 211동 1,2호, 220동 1,2,3,4호	1층	4	205,178,769	217,121,231	-	422,300,000	10,000,000	11,115,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147,805,000	
		2층	8	212,223,742	224,576,258	-	436,800,000	10,000,000	11,84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152,880,000	
		3~5층	15	219,268,716	232,031,284	-	451,300,000	10,000,000	12,565,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157,955,000	
		6~10층	28	223,981,560	237,018,440	-	461,000,000	10,000,000	13,05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61,350,000	
		11~20층	28	228,645,818	241,954,182	-	470,600,000	10,000,000	13,530,000	47,060,000	47,060,000	47,060,000	47,060,000	47,060,000	47,060,000	164,710,000	
		21층 이상	19	235,739,377	249,460,623	-	485,200,000	10,000,000	14,26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169,820,000	
74	206동 3호, 207동 1,2호, 208동 1,2호, 217동 1,2호, 218동 1,2호, 219동 1,2호	1층	3	242,978,694	257,121,306	-	500,100,000	10,000,000	15,005,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175,035,000	
		2층	7	251,335,490	265,964,510	-	517,300,000	10,000,000	15,865,000	51,730,000	51,730,000	51,730,000	51,730,000	51,730,000	51,730,000	181,055,000	
		3~5층	27	259,643,700	274,756,300	-	534,400,000	10,000,000	16,72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187,040,000	
		6~10층	36	265,231,092	280,668,908	-	545,900,000	10,000,000	17,295,000	54,590,000	54,590,000	54,590,000	54,590,000	54,590,000	54,590,000	191,065,000	
		11~20층	73	270,769,898	286,530,102	-	557,300,000	10,000,000	17,865,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195,055,000	
		21층 이상	58	279,126,694	295,373,306	-	574,500,000	10,000,000	18,725,000	57,450,000	57,450,000	57,450,000	57,450,000	57,450,000	57,450,000	201,075,000	
152-P	211동 6호(29층)	21층 이상	1	647,440,433	682,054,152	68,205,415	1,397,700,000	10,000,000	59,885,000	139,770,000	139,770,000	139,770,000	139,770,000	139,770,000	139,770,000	489,195,000	
171-P	224동 5호(29층)	21층 이상	1	724,612,627	763,352,157	76,335,216	1,564,300,000	10,000,000	68,215,000	156,430,000	156,430,000	156,430,000	156,430,000	156,430,000	156,430,000	547,505,000	
192-P	214동 5호(29층)	21층 이상	1	830,087,469	874,465,937	87,446,594	1,792,000,000	10,000,000	79,600,000	179,200,000	179,200,000	179,200,000	179,200,000	179,200,000	179,200,000	627,200,000	
197-P	210동 5호(26층), 213동 2호(29층)	21층 이상	2	847,041,265	892,326,123	89,232,612	1,828,600,000	10,000,000	81,430,000	182,860,000	182,860,000	182,860,000	182,860,000	182,860,000	182,860,000	640,01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 여건에 따라 적정 조정하여 가격이 책정됩니다. 이에 따른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차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펌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펌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대출기관의 대출 기준의 변경, 대출기관의 미확보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차 계약금은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됨),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한 선납할인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청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주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에서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및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2025.10.15.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및 DSR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공급대금	계약금 1차	농협은행	301-0375-6208-8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지정된 1차·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차 계약금을 제외한 공급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이자 등 일체포함)은 세대별 부여된 고유 가상계좌로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등 직접 수납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입금자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 계좌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금액은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납한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201동 101호 홍길동인 계약자 : '2010101홍길동/'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착오 납입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또는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다른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 기간 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1)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납부일정

(단위: 원, VAT 포함)

약식 표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3	13,000,000	1,300,000	11,700,000	-
74	15,000,000	1,500,000	13,500,000	-
152-P	31,000,000	3,100,000	27,900,000	-
171-P	34,000,000	3,400,000	30,600,000	-
192-P	39,000,000	3,900,000	35,100,000	-
197-P	40,000,000	4,000,000	36,000,000	-

2)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비	계약금, 잔금	농협은행	301-0375-6217-9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지정된 납부일자에 맞추어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납부계좌 외의 다른 경로로 이루어진 모든 입금 및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등 직접 수납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201동 1101호 홍길동인 계약자 : '2011101홍길동/'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계약금, 잔금 등 대금의 오납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입금자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p>■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p>-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p> <p>-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p> <p>*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p>-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p> <p>-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p> <p>*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당첨자 발표 서비스</p>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2.11.(목) ~ 2025.12.20.(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12.1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인감도장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청약자	• 건분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도장	대리인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03.)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은 사본을 보관하므로 모바일 신분증이 불가하오니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2025.12.12.(금), 10:00~17:00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건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 재안내 드립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일정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기간내 방문하시어, 서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접수 장소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접수 장소에 비치 (※ 6억 초과 주택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청약신청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		위임장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도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 상기 제증명서류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0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어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구 분	일 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12.12.(금), 10:00~17:00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건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

- 당첨자는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적격여부 불가로 판명되는 경우는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data-bbox="273 1008 2018 1188">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임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입주자 사전 방문

■ 입주자 사전 방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12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함)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의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 2.7m (택배차량 진입가능)	주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 2.7m
지하 2층 : 2.3m (택배차량 진입불가)	부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 2.7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MMI등급 VII-0.204g (내진 I 등급)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사 및 사업주체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 (한강로3가)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13-1, 3층 301호 (문발동, 폴리큐브)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6740008	284911-0241338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견본주택 위치도	비고
 <p>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번지</p>	<p>■ 견본주택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p> <p>■ 사업부지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BL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p> <p>■ 분양문의 : 1660-3255</p> <p>■ 홈페이지 : https://unjeong-iparkcity.com</p>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unjeong-iparkcity.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